

교습비등 고지

2019년 4월 16일 현재

일련번호	교습과목	교습비(원)	정수단위 (월, 분기)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1	SAT(A)	1,700,000	월							
2	SAT(B)	4,300,000	월							
3	ACT(A)	1,700,000	월							
4	ACT(B)	4,300,000	월							
5	IB(A)	850,000	월							
6	IB(B)	2,500,000	월							
7	AP(A)	850,000	월							
8	AP(B)	2,500,000	월							
9	ALEVEL(A)	850,000	월							
10	ALEVEL(B)	2,500,000	월							
11	GED	1,400,000	월							
12	IGCSE(A)	850,000	월							
13	IGCSE(B)	2,500,000	월							
14	외국교과(A)	640,000	월							
15	외국교과(B)	1,900,000	월							
16	토플(A)	1,200,000	월							해당 사항 없음
17	토플(B)	3,400,000	월							
18	IELTS(A)	1,200,000	월							
19	IELTS(B)	3,400,000	월							
20	영어회화	380,000	월							
21	MCAT	3,400,000	월							
22	DAT	3,400,000	월							
23	LSAT	3,400,000	월							
24	LNAT	1,700,000	월							
25	UKCAT	1,700,000	월							
26	BMAT	1,700,000	월							
27	SAT2	1,700,000	월							
28	SSAT	1,200,000	월							
29	AMC	1,200,000	월							
30	MYP	850,000	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맹진영



학 원 원 칙

제1조(목적) 이 학원은 외국어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은 강남캠벨아카데미어학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강남미래타워 1202호 전체(서초동)에 둔다.

제4조(정원) 이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교과목	일시수용능력인원		정원	비고
외국어 (대상: 초·중·고)	SAT 등 20과목	1강의실	14	84	6부제
		2강의실	13	78	
		3강의실	17	102	
		4강의실	12	72	
		5강의실	11	66	
		6강의실	13	78	
		7강의실	11	66	
		8강의실	16	96	
		9강의실	11	66	
		10강의실	11	66	
		11강의실	13	78	
		12강의실	13	78	
		13강의실	10	60	
총 계			165	990	

제5조(교습과정) 이 학원의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주당횟수)	수료기간	교과목	
			과목명	총 이수시간
외국어	2~4시간 (주 1~6회)	1개월	상동	8.4~100.8시간

* 1일교습시간, 수료기간, 총 이수시간란은 1개월 이상 교습과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제6조(수료) ①이 학원의 수료 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강일) ①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②제1항 이외에도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강을 할 수 있다.

③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제8조(교습비등) ①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된 금액을 징수한다.

②이미 납입된 교습비등 중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교습비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 18조 제 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습비등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원호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습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제9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설립·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원칙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 원칙을 수리함.

201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